

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				처리기간	
				20 일	
신청인	①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②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③ 주 소		(전화:)		
사업소	④ 명 칭				
	⑤ 소 재 지		주사무소		
			영 업 소		
⑥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					
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	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(마을버스운송사업, 전세버스운송사업,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)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·도지사 귀하					
※ 첨부서류 1. 사업계획서 1부 2.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2조제1항제4호(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,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				수수료	
				기본 14,000원 자동차 1대당 2,000원 추가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